

창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626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변 론 종 결 2021. 7. 1.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45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82,365,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2020. 9. 15.에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0. 9. 25.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20. 9. 15.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 1) 피고의 남편 D은 재단법인 E의 대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이사이다.
- 2)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남편 F은 2016. 12. 7. D으로부터 재단법인 E이 운영하는 G요양병원을 6,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410,000,000원은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F과 D 사이에 체결된 G요양병원 인수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도금액은 일금 육십이억원(₩6,200,000,000)으로 한다. 단, 재단법인 E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계약금 일자는 2016년 12월 8일 사억일천만원(₩410,000,000) 현물 양도한다.
3. 중도금 일자는 2016년 12월 23일 일억원(₩100,000,000) 현금 지급한다.
4. 잔금 구천만원(₩90,000,000) 일자는 2017년 2월 말경 의료법인 허가증 취득 후 즉시 지급한다.
5. 매도금액 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외 금액은 부채승계로 지급처리한다.

〈부채승계목록〉

- 가. 건물대출금 삼십이억(₩3,200,000,000)
- 나. 직원퇴직금 사억(₩400,000,000)
- 다. 거래처대금(12월말 기준, ₩400,000,000)
- 라. A 회장 차용금 일십일억(₩1,100,000,000)
- 마. 국세 및 지방세 오억(₩500,000,000)

6. 계약금 지불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에 필요한 서류 및 업무 협조에 적극 협조한다.

3) 위 약정에 따라 2016. 12. 15.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C 명의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빌라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82,000,000원(합계 9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피고는 2016.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82,540,854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금원 중 582,365,854원을 C 명의 계좌(신협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에 신탁되어 있었다. C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으로 N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N의

신탁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82,540,854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82,540,854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6. 12. 15. 피고 명의 계좌로 82,540,854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6. 12. 15. 피고 명의 계좌로 82,540,854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2,540,854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D와 F 사이의 이 사건 약정 및 피고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는 D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N의 신탁등기 말소과정에서 D의 아내인 피고 명의 계좌로 82,540,854원을 송금하였다.

③ 2016. 12. 18. 원고와 F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F이 재단법인 E G요양병원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 1,182,540,000원에 대한 차용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차용확인 금액 1,182,540,000원은 F이 G요양병원 인수 약정에 따라 기존에 D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11억 원에 82,540,854원을 더한 금액인데, 이는 F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16. 12. 18. D와 F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확인서에는 ‘3. 재단법인 E 인수인계 금액확인’란에 G요양병원 인수 약정에 따른 다른 인수인계 금액들과 함께 ‘순번 7. 건물 등기분 A회장 대여금 82,540,000원’, ‘F 이사장이 A님에게 7번항 대여금은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구는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F이 인수하는 내용으로도 해석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